

[별표 14] <개정 2004.4.20, 2006.5.3>

안전성확인·완성검사·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기준(제30조제4항, 제32조제2항, 제33조제3항 및 제51조제7항관련)

1. 안전성확인

검 사 대 상 시 설		검 사 항 목
가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	(1) 용기충전시설(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 다)	별표 3 제1호 가목(4)(라)①㉠ 내지 (4)(라)①㉠·(5)·(9)·(10)(다)③·(10)(다)④·(10)(라)
	(2) 자동차용기충전 시설	상 동
	(3)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	상 동
나.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		별표 4 제1호 다목(1)(가)·(1)(다)·(2)(라)·(2)(바)·(2)(사)·(6)·별표 3제1호가목(4)(라)①㉠ 내지 (4)(라)①㉠·(5)
다.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		별표 5 제1호 나목(1)
라.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시설		별표 3 제1호 가목(4)(라)①㉠ 내지(4)(라)①㉠·(5)·(10)(다)③·(10)(다)④·(10)(라)

2. 완성검사

검 사 대 상 시 설		검 사 항 목
가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	(1) 용기충전시설(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 다)	별표 3 제1호 가목
	(2) 자동차용기충전 시설	별표 3 제1호 나목
	(3)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	별표 3 제1호 다목

나.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	별표 4 제1호
다.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영업소용 기저장소	별표 5 제1호, 별표 5의2(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
라. 가스용품제조시설	별표 6 제1호
마.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	별표 7 제1호
바.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(제4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, 사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)	별표 18
사.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49조제 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시설	별표 18 제1호 내지 제4호·제5호[저장 설비에서 건축물 외벽(외벽에 가스계량 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 단밸브)까지 설치된 배관에 적용되는 기준에 한함]·제6호·제10호 내지 제13 호·제15호 내지 제17호·제19호·제20호

※ 완성검사항목중 안전성확인시 확인된 검사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.

3. 정기검사

검 사 대 상 시 설		검 사 항 목
가.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	(1) 용기충전시설 (소형용기충전시설 및 가스난방기용기충전시설을 포함한다)	별표 3 제1호 가목(1) 내지 (3)·(4)(가) 내지 (4)(다)·(4)(라)①㉔·(4)(라)①㉕·(4)(라)①㉖·(4)(마) 내지 (4)(타)·(5)·(6)(나)·(6)(다)·(7)(기밀시험에 한함)·(8)(가) 내지 (8)(다)·(9)·(10)(나)①(기밀시험에 한함)·(10)(다)① 내지 (10)(다)③·(10)(다)⑤ 내지 (10)(다)⑧·(10)(라)(비파괴시험을 제외함)·(11)·(12)(가)·(12)(나)·(13)·(14)·(16)(가) 내지 (16)(사)·제2호 나목 (1)·(2)·(4)·(5)·라목 (1)·마목(2)·사목·아목·자목·차목
	(2) 자동차용기충전시설	별표 3 제1호 가목(2)·(3)·(4)(가)·(4)(다)·(4)(라)①㉔·(4)(라)①㉕·(4)(라)①㉖·(4)(마) 내지 (4)(타)·(5)·(6)(나)·(6)(다)·(7)(기밀시험에 한함)·(8)(가) 내지 (8)(다)·(9)·(10)(나)①(기밀시험에 한함)·(10)(다)① 내지 (10)(다)③·(10)(다)⑤ 내지 (10)(다)⑧·(10)(라)(비파괴시험을 제외함)·(11)(가)·(12)(가)·(12)(나)·(14)(사)·(16)(가) 내지 (16)(사)·나목 (1) 내지 (7)·제2호 나목 (1)·(2)·(4)·(5)·라목(1)·(13)·사목·아목·차목
	(3)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	별표 3 제1호 가목(1) 내지 (3)·(4)(가)·(4)(다)·(4)(라)①㉔·(4)(라)①㉕·(4)(라)①㉖·(4)(마) 내지 (4)(타)·(5)·(6)(나)·(6)

	(다)·(7)(기밀시험에 한함)·(8)(가) 내지 (8)(다)·(9)·(10)(나)①(기밀시험에 한함)·(10)(다)① 내지 (10)(다)③·(10)(다)⑤ 내지 (10)(다)⑧·(10)(라)(비파괴시험을 제외함)·(11)(가)·(12)(가)·(12)(나)·(16)(가) 내지 (16)(사)·제2호 나목 (1)·(2)·(4)·라목 (1)·(13)·사목·아목·차목·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제3호(사업장 밖으로 연장된 배관에 한함)
나.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	별표 3 제1호 가목(2)·(3)·(4)(가)·(4)(다)·(4)(라)①㉡·(4)(라)①㉢·(4)(라)①㉣·(4)(마) 내지 (4)(카)·(5)·(6)(나)·(6)(다)·(7)(기밀시험에 한함)·(8)(가)①·(8)(나)·(8)(다)·(10)(나)①(기밀시험에 한함)·(10)(다)⑤·(10)(다)⑥·(12)(가)·(12)(나)·(16)(가)·(16)(다)·(16)(라)·(16)(마) 별표 4 제1호 가목·나목·다목(1)(나)·(1)(다)·(2)(가)·(2)(나)·(2)(마)·(2)(사)·(2)(자)·(3) 내지 (6)(비파괴시험을 제외함)·라목 내지 차목·별표 3 제2호 나목(1)·(2)·(4)·사목·아목
다.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및 영업소 용기저장소	별표 5 제1호 및 제2호 가목·나목, 별표 5의2(제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
라. 액화석유가스저장소시설	별표 7 제1호 가목(1)·(2)·별표 3 제1호 가목(2)·(3)·(4)(가)·(4)(다)·(4)(라)①㉡·(4)(라)①㉢·(4)(라)①㉣·(4)(마)·(4)(바)·(4)(사) 내지 (4)(카)·(5)·(6)(나)·(6)(다)·(7)(기밀시험에 한함)·(8)(가)①·(8)(나)·(8)(다)·(10)(나)①(기밀시험에 한함)·(10)(다)① 내지 (10)(다)③·(10)(다)⑤·(10)(다)⑧·(10)(라)(비파괴시험을 제외함)·(12)(가)·(12)(나)·

	(16)(가)·(16)(다)·(16)(라)·(16)(마)· 별표 4 제1호 가목·차목·별표 7 제2호 가 목(1)·(2)·별표 3 제2호 나목 (1)·(2)·(4)·사목·아목
마.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(제4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, 바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)	별표 18 제1호 내지 제9호·제11호 내 지 제15호·제18호·별표 4 제1호 다목 (2)(가)·(2)(나)·(3)·(4)·(6)(비파괴시 험을 제외함)
바.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49조제1 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 용시설	별표 18 제1호 내지 제4호·제5호(저장 설비에서 건축물 외벽까지 설치된 배관 에 적용되는 기준에 한함)·제6호·제11 호 내지 제13호·제15호·제20호

4. 수시검사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의 유지·관리상태에 관한 사항

- (1) 안전밸브
- (2) 긴급차단장치
- (3)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및 경보기
- (4) 물분무장치 및 살수장치
- (5) 강제통풍시설
- (6) 정전기 제거장치 및 방폭전기기기
- (7) 배관 등의 가스누출여부
- (8) 비상전력의 작동여부
- (9)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